

2026년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사업 - 신규 창단 인정 조건

2026.5.18.(수) / 대한체육회

□ 신규 창단 인정 조건

- 기업 또는 공공기관/단체에서 지도자와 선수 구성원을 충족하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신규로 창단하거나(직접 관리), 또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한 이후 타 운영단체(지방체육회 등 독립법인)에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(위탁관리)

- 개인종목: (최소) 지도자 1명*, 선수 2명 이상으로 구성

- 단체종목: (최소) 지도자 1명, 선수 엔트리 정원** 이상으로 구성

*플레이코치는 지도자의 성격을 갖되, 경기 출전 선수로 인정함

**엔트리 정원: 전국체육대회 이상의 규모를 가진 대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전에 필요한 최소 인원

※ 남·여·혼성팀 동시 운영 시 남·여·혼성팀 간 지도자(감독 또는 코치) 및 선수의 중복활동(겸임)을 허용하지 않음 (단, 지도자가 한시적 공식 및 채용 중인 경우, 채용 후 증빙자료 제출 필수)

※ 최소 인원 구성 시,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(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학생 선수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지원 대상 불인정)

※ 지자체, 공공기관, 모기업 등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가 아닌, 외형상 별도 법인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선수단 운영권과 실질적 근로관계가 지자체, 공공기관, 모기업 등 상위 운영 주체에 귀속되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해당 상위 운영 주체의 소속 직장운동경기부로 해석될 수 있음 (별도 법인의 직장운동경기부가 아닌, 상위 운영 주체의 직장운동경기부로 인정)

□ 신규 창단 불인정 조건

○ 신규 창단 불인정 조건은 다음의 **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 시 불인정함**

① **[소속 변경(이관)]** 기존 팀 해단 후, 다른 단체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경우
- **기존 팀을 해단**하고 해단된 팀에서 다수의 선수(**75% 이상**)가 다른 단체로 이적하여 팀을 창단하는 경우 신규 창단 불인정

- 즉, 신규 창단은 이적하는 선수의 직전 팀이 해단 없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을 필수 인정 조건으로 함.

(예시) A팀(개인종목)의 선수가 4명이라 가정했을 때, 4명 중 3명 이상이 B팀으로 이적하는 경우
창단 불인정

② **[지도자 겸직]** 동일 단체 내에서, 지도자(코치 및 감독, 플레이코치) 중 1인이라도 겸직하는 경우 신규 창단 불인정

③ **[팀 분리(조건부 허용)]** 기존 팀에서 단순히 인원을 분리하여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하는 경우

- 혼성팀에서 혼성·남·여팀으로 분리하는 경우 신규 창단 불인정

- 기존 종목을 세부종목으로 분리*하여 창단하는 경우 신규 창단 불인정

(예시) 육상팀의 선수가 8명이라 가정했을 때, 해당 운영단체에서 마라톤팀을 창단하고 육상팀 중에서 3명을 마라톤팀으로 이적하는 경우 **창단 불인정**

※ 단, 기존 팀 유지 및 기존 팀의 75% 미만인 선수가 동일 운영단체에서 신규 창단하는 팀으로 이적하고, 지도자(코치 및 감독, 플레이코치)가 겸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건부 신규 창단 인정함

구분	신규 창단 불인정 조건		예시 시각화	창단 불인정 사유
사례 1.	구분	내용	<p>→ 선수 이동경로 ○○ 선수 ○○ 선수</p> <p>선수 75% 이상 ○○군청 이적 후, 기존 팀 해단</p>	재창단 (이관)
	팀 유지 여부	기존 팀 해단		
사례 2.	구분	내용	<p>→ 선수 이동경로 ○○ 선수 ○○ 지도자</p> <p>선수는 조건을 충족하나, 동일 운영단체 내 지도자 겸직</p>	지도자 겸직
	팀 유지 여부	기존 팀 유지		
사례 3.	구분	내용	<p>→ 선수 이동경로 ○○ 선수 ○○ 지도자</p> <p>혼성팀 소속 여성 선수가 이적하여 A종목 여자팀 창단(외부 인원 없음)</p>	재창단 (분리)
	팀 유지 여부	기존 팀 일부 유지(잔류)		
사례 4.	구분	내용	<p>→ 선수 이동경로 ○○ 선수 ○○ 지도자</p> <p>혼성팀에서 여성 선수로 구성된 A종목 여자팀을 창단하고, 잔여 인원 전원 남성으로 기존 혼성팀에서 남성팀으로 변경 (외부 인원 없음)</p>	재창단 (분리)
	팀 유지 여부	기존 팀 일부 유지(잔류)		

※ 이 외 ‘창단지원 공모 신청자격 요건’ 및 ‘창단지원 공모 신청제외 대상’은 공모 기간에 게시될 공모 요강 참고

□ 문의접수 안내

구분	내용
안내 사항	본 공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, 하단의 URL 또는 QR코드를 통하여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.
문의 URL	https://ko.research.net/r/2ndgongmo
문의 QR코드	